

[별표 7]

선박보안계획서 승인, 선박보안심사 및 임시선박보안심사 등의 수수료
(제55조 관련)

1. 선박보안심사 등의 수수료

구 분	선박의 종류	기본수수료	비 고
선박보안계획서 승인·변경승인	기본 수수료: 67,360원 ※ 선박보안계획서 변경승인 수수료의 경우 선박보안계획서 승인 수수료의 2분의 1 감면		○ 선박보안심사(최초 보안심사·갱신보안심사·중간보안심사)·임시선박보안심사·재심사 수수료는 기본수수료에 톤수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. ○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경우에는 해당 보안심사 종류별 수수료를 적용한다.
최초보안심사·갱신보안심사	제1군에 속하는 선박	67,360원	
	제2군에 속하는 선박	84,200원	
중간보안심사	제1군에 속하는 선박	50,520원	
	제2군에 속하는 선박	67,360원	
임시선박보안심사	기본수수료: 50,520원		
특별선박보안심사	없음		
<p>○ 선박종류에 따른 구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1군: 유조선·화학제품운반선·가스운반선·산적화물선·고속화물선 및 그 밖의 화물선 - 제2군: 여객선·고속여객선 및 이동식해양구조물 <p>○ 톤수계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총톤수 500톤 미만: 0.8 - 총톤수 500톤 이상 1,600톤 미만: 0.9 - 총톤수 1,600톤 이상: 1 			

비고

1. 공휴일 보안심사 및 국외 보안심사의 수수료

가. 공휴일에 하는 보안심사의 수수료는 위 표에 따른 수수료에 50 퍼센트를 가산한다.

나. 국외에서의 선박보안심사·임시선박보안심사 수수료는 위 표에

따른 수수료의 4배에 해당하는 수수료로 한다.

2. 보안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보안심사자의 출장에 드는 실비를 별도로 부담한다.

2. 항만시설보안심사 등의 수수료

구 분	규 모	수 수수료		비 고
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 또는 변경승인	항만시설 1건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승인: 55,700원 · 변경승인: 27,850원 		
항만시설보안심사	대상 항만시설 면적	최초 · 갱신심사	중간심사	
	10,000㎡미만	111,400원	55,700원	
	10,000㎡이상 50,000㎡미만	222,800원	111,400원	
	50,000㎡이상 100,000㎡미만	401,000원	200,500원	
	100,000㎡이상 200,000㎡미만	641,600원	320,800원	
	200,000㎡이상 500,000㎡미만	898,200원	449,100원	
	500,000㎡미만 500,000㎡이상	1,077,800원	538,900원	
	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	없음		